

2026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

(2026년 1월 기준)

(단위 : 원)

분 류 [인건비 지급비율]	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재가급여 월 한도액		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월한도액 10% 추가산정 (한도액80%이상+요양월4회이상+간호월2회이상)			2,764,190	2,564,320	1,681,020	1,550,670	1,329,790	743,952
방문요양 (방문당) [87.0%]	30분이상		17,450					이용 불가
	60분이상		25,320					
	90분이상		34,120					
	120분 이상		43,430					
	150분 이상		50,640					
	180분 이상		57,020					
	210분 이상		63,530					
	240분 이상		70,080					
종일 방문요양	12시간 이상~24시간 미만		수가 :	98,860	1,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연간 12일 이내			
방문목욕 (방문당) [49.7%]	목욕차량 내 목욕		88,990					이용 불가
	목욕차량 가정내 목욕		80,230					
	목욕 차량 미이용		50,100					
방문간호 (방문당) [60.2%]	15분 이상~30분 미만		42,880					이용 불가
	30분 이상~60분 미만		53,770					
	60분 이상		64,690					
주.야간 보호 (1일당) [48.6%]	3시간 이상~6시간 미만		41,820	38,720	35,740	34,120	32,490	32,490
	6시간 이상~8시간 미만		56,060	51,930	47,940	46,300	44,650	44,650
	8시간 이상~10시간 미만		69,730	64,590	59,640	58,010	56,360	56,360
	10시간 이상~13시간 이하		76,820	71,160	65,750	64,090	62,460	
	13시간 초과		82,370	76,310	70,500	68,860	67,240	
단기보호 (1일당) [58.9%]	12시간 이상 100% 12시간 미만 50%		74,060	68,580	63,350	61,680	60,000	이용 불가
복지용구 1년 한도액			1,600,000					
시설 급여	노인요양시설 [62.6%]	요양보호사 2.1명당 1명 이상	93,070	86,340	81,540	4,5등급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등급 급여비용 산정		이용 불가
	공동생활가정 [65.2%]		74,590	69,210	63,800			
방문간호 지시서	「의료법」상 의료기관 (보건의료원포함)	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	23,180					
		의사가 가정을 방문	71,280					
	「지역보건법」상 보건소 및 보건지소	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	6,260					
		의사가 가정을 방문	13,500					
의사 소견서	의료법상 의료기관 (보건의료원 포함)		62,020				(치매진단) 29,690	
	지역보건법 상 보건소 및 보건지소		60,570				(치매진단) 27,230	